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8. 31 선고 2022가단543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

변 론 종 결 2023. 7. 20.

판 결 선 고 2023. 8. 3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3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. 1. 31. 접수 제34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철회하였는바,

2022. 12. 3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상의 선택적 청구취지 중 “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. 1. 31. 접수 제34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” 부분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565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, 위 법원으로부터 2018. 12. 11. “C는 원고에게 “64,5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8. 28.부터 2018. 12. 1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.

나. C는 2019. 1. 31.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제34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2019. 1. 31. 기준으로 C가 보유한 적극재산은,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관악구 D 지상 다세대주택 E호(이하 ‘이 사건 다세대주택’이라 한다)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1,768,700원, 위 다세대주택의 시가는 220,000,000원이다.

라. 2019. 1. 31. 기준 C가 원고,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번	채권자	채무상세	채무액(원)
1	원고	판결금채무(갑1호증)	64,550

2	F조합	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. 10. 15.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(갑12호증의 1,2)	15,000,000
3	G조합	D 다세대주택에 관한 2017. 7. 11.자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(갑13호증)	149,000,000
4	피고	사인간 차용금채무(을1호증)	55,021,260
5	H카드	카드대금채무(갑14호증)	2,000,000
6	I카드	카드대금채무(갑14호증)	225,000
7	F조합	금융기관채무(갑14호증)	10,000,000

【이전그림】가 패1 내기 14호증 오 패1호증(가 기기번호 이노 게오 시르 프차) 변

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원고는,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특정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.

살피건대,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C의 적극재산 합계는 301,769,700원이었던 반면, 소극재산 합계는 295,796,260원으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. 그렇다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.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은교

<별 지>

부동산 목록

1. 군산시 대 143.5㎡

2. 군산시 (위 지상)

[도로명 주소] 군산시

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
1층 69.77㎡

2층 61.05㎡ 끝.

